

## ◎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-63호

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3월 14일  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###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중산·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당초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2022년 7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함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(참조: 환경에너지세제과, 전화 (044) 215-4331, 팩스 (044) 215-8069, 이메일 ooh471@korea.kr)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
(전화 044-215-4331, 팩스 044-215-806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